

수원지방법원 2024. 7. 3 선고 2024가단505524 판결 [계약금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30,7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2. 14.부터 2024. 1. 2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김동석

별지